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. 6. 5 .----- 최광렬의원의외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39회 임시회(개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6.6.15) 상정 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**

**가. 제안이유**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06. 4. 28. 법률 제7935호)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*나. 주요골자**

- 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조항 신설(안 제3조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지난 4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내용으로

- 이번 지방자치법의 회기관련 개정의 의미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회기를 조정하도록 하여 의회 운용의 미를 살려 보자는 취지로 인식하게 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됨
- 우리구의회는 지난 2005, 5. 4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현재까지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(1·2차)와 임시회를 각각 운영하여 왔으며,
- 이번 개정안 내용에도 기존 연간 총 회의일수는 변함없으며, 당초 올해 의회 운영 일정안대로 제1·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, 임시회는 42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

○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회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